

제 266 회 정례회
2007. 12. 21.(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 사 보 고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경 과

가. 발 의 자 : 이종호 의원 외 7인

(이종호, 강태원, 민경환, 이대원, 오용식, 이언구, 박영웅, 임 현)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2007년 12월 4일 / 2007년 12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66회 정례회(2007년 12월 1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강태원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변경함(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함(안제9조)
- 수당관련 미비점 보완

-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 수당을 일비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별표2)

3. 검토보고요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윤기관)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 및 관련법규 조문번호를 인용하고 있는바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결산검사 소관부서 이관 및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기타의견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
----------	-----

발의년월일 : 2007년 12월 4일
 발 의 자 : 이종호, 강태원, 민경환,
 이대원, 오용식, 이언구,
 박영웅, 임 현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07. 5.11)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 개정(2007.10. 4)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제83조 및 제84조로 변경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변경함(안 제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변경함(안제9조)

나. 수당관련 미비점 보완

-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삭제(안 제10조)
- 수당을 일비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별표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취 : 별첨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34조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5조제3항”을 “제134조제3항”으로, “제46조의2”를 “제83조”로, “제47조”를 “제84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56조”를 “제64조”로 한다.

제9조 중 “제47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수당”을 “일비”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수당을”를 “일비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수당”을 “일비”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수당”을 “일비”로, “수당을”를 “일비를”로 한다.

제13조 중 “수당”을 “일비”로 한다.

[별표2] 중 구분란의 “수당”을 “일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수당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p> <p>②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기관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p> <p>제11조(수당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도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p> <p>②(생략)</p> <p>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p>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 style="width: 85%;">액 수</td> </tr> <tr> <td>수당</td> <td>(생략)</td> </tr> <tr> <td>여비</td> <td>(생략)</td> </tr> </table>	구분	액 수	수당	(생략)	여비	(생략)	<p>제10조(일비의 지급) ①.....일비를.....</p> <p>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p> <p>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일비를.....</p> <p>②(현행과 같음)</p> <p>제13조(지급기준) 일비</p> <p>[별표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15%;">구분</td> <td style="width: 85%;">액 수</td> </tr> <tr> <td>일비</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여비</td> <td>(현행과 같음)</td> </tr> </table>	구분	액 수	일비	(현행과 같음)	여비	(현행과 같음)
구분	액 수												
수당	(생략)												
여비	(생략)												
구분	액 수												
일비	(현행과 같음)												
여비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①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4조(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③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